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및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제작사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을 추정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

나. 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

다. 하자수리이력정보 고지 및 관리 의무 강화(안 별표 2)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하자수리이력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이외 중 “사망”을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중전의 라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바목(중전의 마목)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세부 감정기준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법 제48조제5항 또는 법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5항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2	200	5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별표 2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2호 나목 중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부분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생략)	제8조의3(-----)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u>사망</u>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 ----- <u>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u>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3